

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- 가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39조의7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원은 공제사업자의 검사업무 및 운영비용을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수입금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도록 규정
- 나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3조의9에 따라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산정방식, 부과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받을 수 있는 수입금을 검사 및 운영수입금, 기금수입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체화(안 제2조)
- 나. 수입금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입금의 부과 및 집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다. 검사대상 기관별 분담요율은 균등분담, 총부채기준, 수입분담금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검사대상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(안 제7조)
- 라. 검사대상 기관별 검사 및 운영수입금 분담요율이 산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고하도록 함(안 제8조)
- 마. 원장은 검사 및 운영수입금의 산출근거,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발부하도록 함(안 제9조)
- 바. 원장은 분담요율의 산정을 위한 보고자료의 징구, 검사 및 운영수입금의 납부 등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
- 사. 분담금 산출체계 변경으로 인해 분담금 증가폭이 큰 공제조합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균등기준 분담요율의 특례 도입(안 부칙 제2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자동차운영보험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제출자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

2) 팩스 : (044) 201 - 5587

3) 전자우편(이메일) : demi2114@korea.kr, pkm0903@korea.kr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(전화 : (044) 201-48

71, 487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

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